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11일, 신성범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신성범)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각 부처에서 장관이 협의를 통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빈집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도시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도·농복합지역 등 일부 중복조사의 문제 발생 등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으며, 각 지자체별로 위임하는 전문기관이 달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각각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

이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이를 고려할 때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다른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빈집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